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335호 2018. 2. 7(수)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3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9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5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 인천  
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15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9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33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2018.1.1.시행, 법률 제15292호 2017.12.26.)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 + 전자송달고지(e-메일) 납부 시 :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
  - 개정 후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7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2018.1.1.시행, 법률 제15292호 2017. 12.26.)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현행

-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 + 전자송달고지(e-메일) 납부 시 :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

#### ○ 개정 후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해당 없음”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12월31일까지 :”를 각각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별지 제1호서식-----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 -----  
 -----  
 -----  
 --.

② -----  
 -----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

# 관계 법령 발췌 사항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3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시행 2018.1.1.)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
  -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등(안 제4조 ~ 제7조)
- 다. 고충민원 대상, 고충민원 분류(안 제8조 ~ 제17조)
- 라.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안 제17조 ~ 제21조)
- 마. 권리보호 요청 및 대상(안 제22조 ~ 제26조)
- 바. 납세자권리현장에 대한 사항(안 제27조 ~ 제28조)
- 사.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관리(안 제29조 ~ 30조)
- 바. 권리보호요청대상, 요청기한, 처리기한(안 제24조 ~ 제28조)
- 사. 납세자권리현장 제정 및 결정(안 제29조 ~ 제30조)
- 아.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안 제31조 ~ 제37조)
- 자.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안 제38조 ~ 제40조)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7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시행 2018.1.1.)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
-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등(안 제4조 ~ 제7조)
- 다. 고충민원 대상, 고충민원 분류(안 제8조 ~ 제17조)
- 라.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안 제17조 ~ 제21조)
- 마. 권리보호 요청 및 대상(안 제22조 ~ 제26조)
- 바. 납세자권리현장에 대한 사항(안 제27조 ~ 제28조)
- 사.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관리(안 제29조 ~ 30조)
- 바. 권리보호요청대상, 요청기한, 처리기한(안 제24조 ~ 제28조)
- 사. 납세자권리현장 제정 및 결정(안 제29조 ~ 제30조)
- 아.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안 제31조 ~ 제37조)
- 자.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안 제38조 ~ 제40조)

##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별지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발굴

3.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 제3장 고충민원

**제8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 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행정안전부장관·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 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 자문 또는 사실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불이익변경 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연기 신청을 하려면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22조(권리보호 요청 사무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 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 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 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4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 제27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28조(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 제8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제31조(업무의 범위)** 구청장은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2조(기한의 연장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4조(가산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징수유예 등 신청)**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 제9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3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발췌사항

### □ 「지방세기본법」 (2018. 1. 1. 시행)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8. 1. 1. 시행)

####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3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 납세자 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3조)
  - 나. 고충민원 처리 사항 등(안 제4조 ~ 제10조)
  -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안 제11조 ~ 제16조)
  - 라. 권리보호 요청 등(안 제17조 ~ 제22조)
  - 마.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안 제23조 ~ 제25조)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7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192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행규칙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1. 제정이유

-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 납세자 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3조)
- 나. 고충민원 처리 사항 등(안 제4조 ~ 제10조)
-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안 제11조 ~ 제16조)
- 라. 권리보호 요청 등(안 제17조 ~ 제22조)
- 마.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안 제23조 ~ 제25조)

##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참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 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고충민원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연장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및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기간 연기신청)** 제20조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기하려고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6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 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권리보호 요청

-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

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그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다.

##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3조(기한의 연장)** ① 제32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

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33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35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35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징수유예 등)** ① 제37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 「지방세징

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37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 (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약)					
00과 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7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과장

(경유)

###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16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7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8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9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0호서식]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대상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22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3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남  
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4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5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6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7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8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별지 제29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0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5항)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사반			조사유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1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과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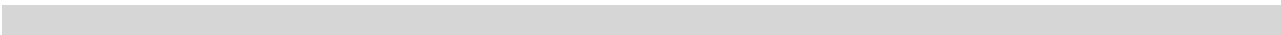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2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3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 일간)	

끝.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5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귀하 (귀 법인)의 지방세 (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통지내 역	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      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36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 )	일간

끝.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7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끝.

##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8호서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 의견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9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승인 여부)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1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등           신청 접수 통보  
          [ ] 체납처분유예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신청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붙임 신청서 사본 1부. 끝.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관계 법령 발췌사항

### □ 「지방세기본법」 (2018. 1. 1. 시행)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8. 1. 1. 시행)

####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4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한이유

- [별표 2]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 신고수수료를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에 신설하고,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를 [별표 2]로 변경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무료 발급 신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7. 12. 21.)으로 정보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따라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 공개 범위 확대

### 2. 주요내용

- [별표 2] 공중위생관련영업신고 수수료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에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 신고수수료 신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무료 발급 반영
- 일반행정분야 (1)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 발급” 신설

-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 2]로 변경하고,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966, FAX 032-560-2722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별표 2]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 신고수수료를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에 신설하고,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를 [별표 2]로 변경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무료 발급 신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7. 12. 21.)으로 정보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따라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 확대

### 2. 주요내용

- [별표 2] 공중위생관련영업신고 수수료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에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 신고수수료 신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무료 발급 반영
- 일반행정분야 (1)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무료 발급” 신설
-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를 [별표 2]로 변경하고,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중위생관련영업신고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을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하며,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b>【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b>			
<b>1. 일반행정분야</b>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b>※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b>	“	<b>무료</b>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당	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	”	300원	
(7)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당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당	600원	
<b>2. 문화관광체육분야</b>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	”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	1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	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	"	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b>3. 부동산중개업분야</b>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800원	
(6)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800원	
<b>4. 농수산업분야</b>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1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9)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0)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31)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500원	
(32)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2,000원	
(33)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2,000원	
(34)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35) 어업 신고 수수료	"	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500원	
(3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3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39)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	800원	
(40)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41)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800원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43)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3,000원	
(44)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	3,000원	
(4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46)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4,500원	
(49)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1)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5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3,000원	2016.12.30. 삭제
(5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무료	
(60) 어획물 운반업 등록	"	5,500원	
(6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6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	1,000원	
(6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	500원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1,000원	
<b>5. 공장설립분야</b>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b>6. 석유판매업분야</b>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b>7. 환경분야</b>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	5,000원	
<b>8. 위생분야</b>			
<b>(1) 위생처리업 신규 신고</b>	<b>1건당</b>	<b>6,000원</b>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2)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	“	3,500원	
(3) 세척제 제조업 신규 등록	“	20,000원	
(4) 세척제 제조업 변경 신고	“	10,000원	
(5)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	“	6,000원	
(6)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	“	3,500원	
<b>9. 보건사회분야</b>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800원	
(1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당	500원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당	40,000원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	20,000원	
<b>10. 도시계획분야</b>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1,500원)	
(2) 환지(예정지) 증명	1통당	400원	
<b>11. 건설행정분야</b>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b>12. 교통행정분야</b>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500원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	"	1,000원	
<b>13.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b>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00원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500원	
(4)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필지	6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칼리불가)	8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4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 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국문·영문)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국문·영문)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제적증명서	1건	무료	
- 정원외관리증명서	1건	무료	
- 졸업예정증명서	1건	무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 교육비납입증명서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19) 어선원부	1건	700원	

## [별표 2]

## 정보 공개 수수료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li> <li>○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마다 3,000원</li> </ul> </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마다 3,000원</li> </ul> </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0원</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ul> </li> </ul> </li> </ul>
마이크 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1회: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ul> </li> <li>○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2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50원</li> </ul> </li> </ul> </li> <li>○ 마이크로필름의 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li>○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전자 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1,500원</li> <li>·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로 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요일)</b>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중위생관련영업신고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제증명 등 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10%;">기준</th> <th style="width: 10%;">요금</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td> <td></td> <td></td> <td></td> </tr> <tr> <td><b>1. 일반행정분야</b></td> <td></td> <td></td> <td></td> </tr> <tr> <td>(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lt;신 설&gt;</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원</td> <td></td> </tr> <tr> <td>2 ~ 7. (생략)</td> <td></td> <td></td> <td></td> </tr> <tr> <td><b>8. &lt;신 설&gt;</b></td> <td></td> <td></td> <td></td> </tr> <tr> <td><b>8. 보건사회분야</b></td> <td></td> <td></td> <td></td> </tr> <tr> <td><b>9. 도시계획분야</b></td> <td></td> <td></td> <td></td> </tr> <tr> <td><b>10. 건설행정분야</b></td> <td></td> <td></td> <td></td> </tr> <tr> <td><b>11. 교통행정분야</b></td> <td></td> <td></td> <td></td> </tr> <tr> <td><b>12.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b></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b>1. 일반행정분야</b>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신 설>	1건당	800원		2 ~ 7. (생략)				<b>8. &lt;신 설&gt;</b>				<b>8. 보건사회분야</b>				<b>9. 도시계획분야</b>				<b>10. 건설행정분야</b>				<b>11. 교통행정분야</b>				<b>12.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b>				<p><b>제3조(요일)</b> ----- ----- <u>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u> ----- [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제증명 등 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10%;">기준</th> <th style="width: 10%;">요금</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td> <td></td> <td></td> <td></td> </tr> <tr> <td><b>1. 일반행정분야</b></td> <td></td> <td></td> <td></td> </tr> <tr> <td>(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u>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u></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당 1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원 무료</td> <td></td> </tr> <tr> <td>2 ~ 7.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b>8. 위생분야</b></td> <td></td> <td></td> <td></td> </tr> <tr> <td>(1) 위생처리업 신규 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원</td> <td></td> </tr> <tr> <td>(2)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원</td> <td></td> </tr> <tr> <td>(3) 세척제 제조업 신규 등록</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td> </tr> <tr> <td>(4) 세척제 제조업 변경 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d></td> </tr> <tr> <td>(5)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원</td> <td></td> </tr> <tr> <td>(6)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원</td> <td></td> </tr> <tr> <td><b>9. 보건사회분야</b></td> <td></td> <td></td> <td></td> </tr> <tr> <td><b>10. 도시계획분야</b></td> <td></td> <td></td> <td></td> </tr> <tr> <td><b>11. 건설행정분야</b></td> <td></td> <td></td> <td></td> </tr> <tr> <td><b>12. 교통행정분야</b></td> <td></td> <td></td> <td></td> </tr> <tr> <td><b>13.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b></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b>1. 일반행정분야</b>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u>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u>	1건당 1건당	800원 무료		2 ~ 7. (현행과 같음)				<b>8. 위생분야</b>				(1) 위생처리업 신규 신고	1건당	6,000원		(2)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	“	3,500원		(3) 세척제 제조업 신규 등록	“	20,000원		(4) 세척제 제조업 변경 신고	“	10,000원		(5)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	“	6,000원		(6)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	“	3,500원		<b>9. 보건사회분야</b>				<b>10. 도시계획분야</b>				<b>11. 건설행정분야</b>				<b>12. 교통행정분야</b>				<b>13.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b>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b>1. 일반행정분야</b>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신 설>	1건당	800원																																																																																																															
2 ~ 7. (생략)																																																																																																																	
<b>8. &lt;신 설&gt;</b>																																																																																																																	
<b>8. 보건사회분야</b>																																																																																																																	
<b>9. 도시계획분야</b>																																																																																																																	
<b>10. 건설행정분야</b>																																																																																																																	
<b>11. 교통행정분야</b>																																																																																																																	
<b>12.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b>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b>1. 일반행정분야</b>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u>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u>	1건당 1건당	800원 무료																																																																																																															
2 ~ 7. (현행과 같음)																																																																																																																	
<b>8. 위생분야</b>																																																																																																																	
(1) 위생처리업 신규 신고	1건당	6,000원																																																																																																															
(2)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	“	3,500원																																																																																																															
(3) 세척제 제조업 신규 등록	“	20,000원																																																																																																															
(4) 세척제 제조업 변경 신고	“	10,000원																																																																																																															
(5)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	“	6,000원																																																																																																															
(6)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	“	3,500원																																																																																																															
<b>9. 보건사회분야</b>																																																																																																																	
<b>10. 도시계획분야</b>																																																																																																																	
<b>11. 건설행정분야</b>																																																																																																																	
<b>12. 교통행정분야</b>																																																																																																																	
<b>13.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b>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자치단체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		[별표 2] 자치단체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공개 대상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생략)	문서·도면·사진 등	(현행과 같음)
필름·테이프 등	(생략)	필름·테이프 등	(현행과 같음)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생략)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현행과 같음)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li> <li>-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무료</u></li> <li>※ <u>매체비용은 별도</u></li> </ul> </li> <li>○ <u>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 관계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7.26.]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제11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7.8.)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4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명칭 변경, 조례위임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라 제명변경
- 법률 명칭 및 용어변경
-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 정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조항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안 반영
- 상위법에 위임 근거 없는 조항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도시재생경관과, 전화 : 032-560-4186, 팩스 : 032-560-27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 이유

-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및 조례위임사항 신설
- 나.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선 권고사항

## 2. 주요 내용

### 가. 제명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법률 명칭 및 용어변경(안 제1조, 제2조, 제 5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23조, 24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 “벽면 이용 간판”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 다.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 정비(안 제8조)

- 의무 부과 조항 삭제(제8조제4항)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전자계시대(지주식 디지털광고물) 표출관리 조항 신설

마.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안 반영

(안 제18조, 안 제18조의 2, 안 제24조제2항)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선(안) 반영  
(제18조, 제18조의2)
- 수수료 반환 규정 추가(제24조제2항)

바. 상위법에 위임 근거 없는 조항 삭제(안 제21조)

- 상위 법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사항 삭제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8. 2월중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라. 개 정 안 : “별지 참조”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바.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사. 관 계 법 령 발 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간판 및 옥상간판

제4조제2호 중 “네온류”를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장하는”을 “연장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하는”을 “사용하거나 디지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

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를 “광고업자에게 우수광고사업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업무”를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후단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8조의 제목“(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을“(공공게시시설 관리와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를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 의”로, “지정게시대의”를 “공공게시시설의”로, “지정게시대를”을 “공공게시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 수량, 위탁 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16

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아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한다.

제18조제8항(중전의 제2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수탁자를 선정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17 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 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⑥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⑦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점검결과, 공공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을“(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월말”을 “10월 말”로, “이를”을 “그 내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시방법·절차”를 “실시 방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로, “사람은”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자에게”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로, “위탁받하고자 하는”을 “위탁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위탁지정하는”을 “지정하여 위탁하는”으로,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를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2월말”을 “교육 시작 전년도 12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을”을 “2항에 따라 교육을”로, “때”를 “경우”로,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교육을”을 “제2항에 따라 교육을”로,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자에게”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을”을 “제2항에 따라 교육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구청장은 제1항”을 “제1항”으로, “법 제11조의 4”를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와”를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를 “수수료: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를 “수수료: 별표 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이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5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5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6㎡ 이상 4.0㎡ 이하	65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5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m <sup>2</sup> 이상 10.0m <sup>2</sup>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m <sup>2</sup> 이상 20m <sup>2</sup> 미만	
- 10.1m <sup>2</sup> 이상 12.0m <sup>2</sup> 이하	110만원
- 12.1m <sup>2</sup> 이상 14.0m <sup>2</sup> 이하	130만원
- 14.1m <sup>2</sup> 이상 16.0m <sup>2</sup> 이하	150만원
- 16.1m <sup>2</sup> 이상 18.0m <sup>2</sup> 이하	170만원
- 18.1m <sup>2</sup> 이상 20.0m <sup>2</sup>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m <sup>2</sup> 이상 50m <sup>2</sup> 미만	
- 20.0m <sup>2</sup> 이상 25.0m <sup>2</sup> 이하	210만원
- 21.1m <sup>2</sup> 이상 30.0m <sup>2</sup> 이하	230만원
- 30.1m <sup>2</sup> 이상 35.0m <sup>2</sup> 이하	245만원
- 35.1m <sup>2</sup> 이상 40.0m <sup>2</sup> 이하	260만원
- 40.1m <sup>2</sup> 이상 45.0m <sup>2</sup> 이하	280만원
- 45.1m <sup>2</sup> 이상 50.0m <sup>2</sup>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m <sup>2</sup>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m <sup>2</sup> 를 초과하는 면적의 1 m <sup>2</sup>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m <sup>2</sup> 이하	30만원
- 연면적 6m <sup>2</sup> 이상 10m <sup>2</sup>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m <sup>2</sup> 이상 15m <sup>2</sup>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m <sup>2</sup> 이상 20m <sup>2</sup>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m <sup>2</sup> 이상	70만원 + 연면적 21m <sup>2</sup>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sup>2</sup>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m <sup>2</sup> 이상	150만원+연면적 11m <sup>2</sup>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sup>2</sup>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m <sup>2</sup> 미만	
- 1.0m <sup>2</sup> 이하	10만원
- 1.1m <sup>2</sup> 이상 2.0m <sup>2</sup> 이하	20만원
- 2.1m <sup>2</sup> 이상 3.0m <sup>2</sup>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m <sup>2</sup> 이상 5m <sup>2</sup> 미만	
- 3.0m <sup>2</sup> 이상 4.0m <sup>2</sup> 이하	35만원
- 4.1m <sup>2</sup> 이상 5.0m <sup>2</sup>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m <sup>2</sup> 이상	50만원+연면적 5m <sup>2</sup> 를 초과하는 면적의 1 m <sup>2</sup>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 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 등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p>가. 관계 법규(3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li> <li>-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li> </ul> <p>※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li> </ul>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li> <li>-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li> </ul>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교육</li> <li>- 사이버교육</li> </ul>	
보수교육	3시간	<p>가. 관계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li> <li>-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li> </ul> <p>(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li> </ul> <p>※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p>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교육</li> <li>- 사이버교육</li> </ul>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p>가. 관계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li> <li>-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li> </ul> <p>(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li> </ul>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교육</li> <li>- 사이버교육</li> </ul> <p>※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p>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구지역	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4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1개마다로 한다)	5,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 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m <sup>2</sup>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m <sup>2</sup> 초과시 1m <sup>2</sup> 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마다로 한다)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m <sup>2</sup> 이하	3,000원	
- 연면적 1m <sup>2</sup> 초과시 1m <sup>2</sup>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 부에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면적 또는 연면적 5m <sup>2</sup>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m <sup>2</sup> 초과시 1m <sup>2</sup> 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마다로 한다)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마다로 한다)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디지털디스플레이등을 이 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3) 가로등 현수기(1개)		5,000원
파. 벽보(50매마다로 한다)		5,000원
하. 전단(1,000매마다로 한다)		5,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 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 우를 포함한다)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수수료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성명

직위(직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별지 제14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b>공공계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b>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단체명)		
	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위 탁 내 용			
<p>「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span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15px;">직인</span></p>			



- 1. ~ 6. (생략)
-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삭제

③ (생략)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 1. ~ 6. (현행과 같음)

- 7. -----  
-----  
----- 제12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  
-----  
-----  
-----.

-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간판 및 옥상간판

-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① -----  
-----  
----- 연장  
할 수 있는 -----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 로형 간판

2. ~ 6. (생략)

<신설>

---. -----  
- 사용하거나 디지털 -----  
-----  
-----.

1. 영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

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계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계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 2항제7호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제8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 (생략)
- 7. 그 밖에 주민협약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약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주민협약회의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 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필요-----  
-----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의 담당 공무원의 임기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⑦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한 법률」-----

----- 광고업자에게 우수  
광고사업자-----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  
----- 사람

<삭제>

③ -----  
관련 업무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현행과 같음)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생략)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

2. -----  
-----  
-----  
-----  
-----  
-----  
-----  
-----

3. -----  
-----  
----- 사람이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

⑤ -----  
-----  
----- 필요-----  
-----  
-----.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와 위탁 등) ① ----- 제12조 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 의 -- 공공게시시설의 ---

에게 공개경쟁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지정계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②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  
-----  
공공게시시설을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 수량, 위탁 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  
-----  
-----.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16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아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장이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수탁자를 선정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17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 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점검결과, 공공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2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① ----- 법 제11조제2항 -----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  
-----  
-----  
-----  
-----  
-----.

<삭 제>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옥외광고사업 -  
-----

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생략)
-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 4. (생략)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생략)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

-----.

② ----- 10월 말-----  
-----  
-----  
그 내용을 -----.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3. --- 실시 방법·절차 -----  
-----
- 4. (현행과 같음)

③ -----  
----- 교육 대상자를 확정  
하여 개별 통지-----  
----- 사람에게 -----  
-----.

④ -----  
----- 옥외광고사업-----  
-----  
-----.

⑤ (현행과 같음)

⑥ ----- 드는 -----  
----- 사  
람이 -----.

⑦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 옥외광고사업 -----  
-----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

위탁받으려는 -----  
-----.

② ----- 옥외광고사업 -----  
----- 지정하여 위탁하는 -----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말 -----  
-----.

⑤ 2항에 따라 교육을 -----  
----- 경우-----  
-----  
-----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  
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  
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  
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  
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한 교육  
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  
료는 별표 3과 같다.

----- 내주어야  
-----.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 구  
청장-----  
-----  
----- 드는 -----  
----- 사람이 -----  
-----.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  
-----  
-----  
-----.

⑧ 제1항-----  
-----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  
-----  
-----.

제24조(수수료) ① -----  
----- 호의 --.

- 1. -----  
----- 수수  
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신설>

2. -----  
-----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이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input type="radio"/>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input type="checkbox"/>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input type="radio"/>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우리 조례 제21조 삭제: 상위법 위임 근거없는 조항 삭제)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③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④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⑤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⑥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 정비( 제8조제4항 의무부과사항 삭제)

법제처 검토				해당부서 검토의견	
관련 조례	현행 및 문제점	법제처 개선의견	유형	관련 조례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진흥'이 추가되고, '시·도' 기금을 설치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6.공포, 2016.7.7.시행)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운영을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지원 강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2017. 12. 20. 개정완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주민협의회에 서류 제출 부담 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 운영 제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	수용 시 조례 공포시 개정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국민권익위원회)

**(14년-1) 옥외광고물게시시설위탁·운영의 투명성제고**  
 ※ 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4171(2014.11.13.) 문서 참조

1-1.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1-2.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 마련	2-1. 수탁자에 대한 선정 방법 및 기준 등 마련	2-2.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3. 미반환토록 규정한 수수료 규정의 개선
--------------------------	----------------------	------------------------------	--------------------------	-------------------------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폐기하십시오.)							공급받는지 보관용		
국민납부자(자료)	상 호			사업자번호				<b>꼭! 협조하여 주십시오</b>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글씨나 숫자등이 틀리지 않게 도박도박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 주십시오. 발행 후 임의변경은 불가합니다. 재발행 절차가 복잡하오니 실수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 : 427-4111 안전도검사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주소								
	전 화			FAX/H·P					
	기타자료								
※ 2011. 1. 1부터 저희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월 10일까지 발행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E-mail, 구청, 군청팩스, 우편등의 방법으로 차질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b>신한은행 계좌번호</b> 중 구 청 : 100-027-244254 동 구 청 : 100-027-244457 남 구 청 : 100-027-247987 연수구청 : 100-027-243331 남동구청 : 100-027-242891 부평구청 : 100-027-246740 계양구청 : 140-009-258146 서 구 청 : 100-027-244795 경제자유 : 100-027-243790 구 역 청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금 액	세 액	<b>농협 계좌번호</b> 강 화 군 : 301-0082-4764-31 중 구 청 (영종출장소) : 351-0386-9611-13 경제자유구역 (영종출장소) : 351-0371-6150-63 서 구 청 (검단출장소) : 351-0381-8611-83 예금주 :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합계금액				기 타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자료 및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비용이 입금되었기에 영수합니다. <b>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협회장</b>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12번길 13(효성동) TEL : 427-4111 E-mail : ioaa@hanmail.net									

※ 위의 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자료요청서로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등 자료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사)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전용

<붙임 1.>

청렴·투명·세상

---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

2014. 1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52호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함

### 2. 주요내용

- 제3조(대관의 범위) ①항 1호 중 청소년문화의집 부분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별표] 서구문화회관사용료 중 1. 시설사용료 변경
- [별표] 서구문화회관사용료 중 2. 부속설비 사용료 변경

###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7,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함

## 2. 주요내용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변경

##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7, 팩스 032-560- 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서구립예술단을 효율적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예술단의 운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한다)에 위탁 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 중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 하며, 제4조를 대신하여 문화재단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자체운영방침을 마련하여 구청장 승인을 얻은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조례안 제14조 제3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7,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함

## 2. 주요내용

- 제3조(대관의 범위) ①항 1호 중 청소년문화의집 부분 삭제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별표] 서구문화회관사용료 중 1. 시설사용료 변경
- [별표] 서구문화회관사용료 중 2. 부속설비 사용료 변경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같은 호 및 제5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본시설 :”을 “기본시설:”로, “전시실, 청소년문화의집”을 “전시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속설비 :”를 “부속설비:”로 한다.

제4조의2 중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사용”을 “회관 사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오전 :”을 “오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오후 :”를 “오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야간 :”을 “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다음회”를 각각 “다음 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시”를 “사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

용당일”을 “사용 당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자의 변상책임)”을 “(사용자의 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의의무”를 “주의”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과쇄”를 “분쇄”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관리, 운영하계”를 “관리·운영하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구문화회관사용료(제11조와 관련)

##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 사	
대 공 연 장	오 전	100,000	150,000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 의 20퍼센트를 가산함.
	오 후	130,000	180,000	
	야 간	200,000	280,000	
소 공 연 장	오 전	30,000	45,000	○ 공연(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 트로 함. ○ 공연(행사)의 준비·진행·철거를 위하여 12:00~13:00, 17:00~ 18:00 사용 시에는 다음 회 사용 료의 25퍼센트로 하고,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 의 150퍼센트로 함.
	오 후	45,000	65,000	
	야 간	70,000	90,000	
회 의 장	1 회	60,000		○ 1회로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전 시 실	1 일	47,500		○ 1일(09:00~22:00) ○ 면적 : 314㎡(≒ 95평)

##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부속설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1회공연	30,000		
무대시설	오케스트라		1회공연	20,000		
	회전무대		1회공연	20,000		
	수평이동무대		1회공연	20,000		
	승하강무대		1회공연	20,000		
	지하승하강리프트		1회공연	20,000		
	공바톤		1회1개	10,000		
	덧마루설치		1회	기본 66㎡ 이하	50,000	
				66㎡ 초과 추가 6.6㎡당	10,000	
	후로링매트설치		1회공연	10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무대음향	마이크		1일 기본3개	10,000		
			추가 1개당	3,000		
	특수	PIN	1일1개	30,000		
	마이크	W/L	1일1개	20,000		
	녹음	FILE	1시간	10,000		
	M R ( A R , B G M )			1시간	10,000	
빔프로젝트			1회공연	2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1시간	4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을 징수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소공연장		1시간	20,000		
	청소년문화의집		1시간	20,000		
	특수효과기	핀스포츠라이트	1회공연 1대	2kw	20,000	
				1kw	10,000	
		포그머신(액별도)	1회공연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액별도)	1회공연 1대	10,000		
		스트로바	1회공연 1대	10,000		
	무빙위시라이트	1회공연 1대	15,000			
냉난방	대공연장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세에 10퍼센트를 가산한 범위 내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냉방 : 6월~8월 ○ 난방 : 11월~3월 ※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소공연장		1시간			
	전시실		1시간			
	회의장		1시간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액의 5퍼센트		○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p> <p>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p> <p>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입장권”이라 함은 문화행사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입장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5. “단체”라 함은 단체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 뜻은 ----- --.</p> <p>1. ----<u>이</u>란 ----- ----- -----.</p> <p>2. -----<u>이</u>란 ----- ----- -----.</p> <p>3. -----<u>란</u> ----- ----- -----.</p> <p>4. -----<u>이</u>란 ----- ----- ----- -----<u>란</u> ----- ----- -.</p> <p>5. ----<u>란</u> ----- ----- -----.</p>
<p>제3조(대관의 범위) 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회관”</p>	<p>제3조(대관의 범위) ① ----- -----</p>

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 대·소공연장, 회  
의장, 전시설, 청소년문화의집
- 2. 부속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  
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생략)

제4조의2(대관심의) 회관의 대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  
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1. ~ 6. (생략)

제6조(허가취소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  
나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생략)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  
-----  
-----.

- 1. 기본시설: -----  
--- 전시설
- 2. 부속설비: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대관심의) -----  
-----  
- 인천광역시 서구 대관심의위  
원회를 구성·운영-.  
-----

제5조(사용의 제한) -----  
-----  
----- 회관 사용-----  
-----.

-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허가취소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 2. ----- 밖에 -----

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 6. (생략)

② 삭제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의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

-----  
-----

3. ~ 6.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료 면제) -----  
-----  
-----  
-.

1. (현행과 같음)

2. -- 밖에 -----  
-----  
-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  
-----  
-----  
-----  
-----.

1. 오전: -----

2. 오후: -----

3. 야간: -----

② -----  
-----  
-----  
-----  
-----.

여 회관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1. (생략)
-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30퍼센트
- 4. 30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영화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  
-----  
-----.

- 1. (현행과 같음)
- 2. -----  
---- 다음 회 -----  
--
- 3. -----  
---- 다음 회 -----  
--
- 4. ----- 사용 시-----  
-----

③ -----  
-----  
-----  
-----  
-----  
-----  
-----  
-----  
-----  
-----  
-----.

- 사용 당일-----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  
-----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제11조의 사용료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1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징수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50퍼센트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 4. (생략)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  
-----  
-----  
-----  
-----  
-----  
-----  
-----  
-----  
제11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  
-----  
-----  
-----  
-----  
-----.

1. ----- 밖에 -----  
-----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자의 주의) ① -----  
-----  
-----  
----- 주의-----  
-----.

제17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 ③ (생략)

④ 입장권의 잔표와 회수 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구청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3년간 보관 후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18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5. (생략)

제20조의2(문화교양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하여 문화교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2조(위탁관리) 구청장은 회관

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제17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분쇄 -----.

제18조(입장의 제한)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위해(危害)-----  
-----  
-----

4. 5.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문화교양센터 운영) ①

----- 인천광역시 서구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위탁관리) -----

-----  
-----  
-----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운영하게 -----.

## 관 계 법 령

###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문화회관 운영·관리
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관리
3.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4.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시행
5.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구 문화대학 운영)
6.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서구 문화회관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위함.

## 2. 주요내용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변경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

행사(공연)장소			행사(공연)명		
행사(공연)일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전준비	(년 월 일까지 (시 ~ 시))		
		리허설및무대연습	(년 월 일까지 (시 ~ 시))		
출연 예상인원		장비 반입	연락처	☎ : 휴대폰:	
제출서류 1. 행사시 일정표는 2일전까지 3부 제출 2. 장비반입시 장비목록을 작성하여 행사 2일전까지 1부 제출 (무대효과기·피아노·비디오촬영·기타 전기 및 무대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 3. 녹음희망시 녹음매체는 2일전까지 제출)					

행사관련 부대시설 사용여부

시 설 물		사용계획(시간)		시 설 물		사용계획(시간)	
무대조명	조명	공연행사준비		무대시설	바 텐	총사용량	
		본 행사				공연작동	
	핀스포트라이트	공연행사준비			수평이동무대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포그머신 (액별도)	공연행사준비			오케스트라 비트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회전무대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드라이 아이스 (액 별도)	공연행사준비		덧마루	본 행사			
	본 행사						
스트로바	공연행사준비		후로링매트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무빙위시라이트	공연행사준비		음향반사판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무대음향	마이크	공연행사준비		기타시설	합창단석	본 행사	
		본 행사				피아노	공연행사준비
	M.R	공연행사준비			냉·난방		본 행사
		본 행사				분장실	1층
	녹음	FILE			출연자대시길		지층
		V.P사용	공연행사준비				대·소도구 및 기타
본 행사							

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행사 주체 담당자  
 성 명 : (인)

문화회관담당자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 서구문화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행사명 (단체명)		장 소	대 · 소 공연장
행사일시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사전준비	년 월 일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변경사용 여부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	시설명	사용여부	사용료	
공연행사준비	당초		피아노	공연행사준비)		
	추가			본 행사)		
본 행사	당초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비트		
	추가			회전무대		
냉, 난방	당초			수평이동무대		
	추가			승하강무대		
무대음향	마이크			지하승강장리프트		
	M.R.			후로링매트 설치		
	녹음	FILE		덧마루 설치		
무대조명	연출조명			음향반사판		
	특수효과기	핀스포트라이트			기타	
		무빙위시라이트				
		스트로바				
		포그머신(액별도)				
		드라이아이스(액별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연(행사)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자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구문화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행사명 (단체명)		장 소	대 · 소 공연장
행사일시	년 월 일 요일부터 월 일 요일까지( 일간)	사전준비	년 월 일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변경사용 여부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	시설명	사용여부	사용료			
공연행사준비	당초		피아노	공연행사준비)				
	추가			본행사)				
본행사	당초		무대시설					
	추가					오케스트라비트		
냉, 난방	당초					회전무대		
	추가					수평이동무대		
무대음향	마이크					승하강무대		
	M.R.					지하승강장리프트		
	녹음	FILE				후로링매트 설치		
						덧마루 설치		
무대조명	연출조명					음향반사판		
	특수효과기	핀스포트라이트					기타	
		무빙위시라이트						
		스트로바						
		포그머신(액별도)		사용료	금 원정(₩ 원)			
		드라이아이스(액별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연(행사)의 사용(변경)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관 계 법 령

###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문화회관 운영·관리
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관리
3.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4.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시행
5.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구 문화대학 운영)
6.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서구립예술단을 효율적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예술단의 운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 중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 하며, 제4조를 대신하여 문화재단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자체운영방침을 마련하여 구청장 승인을 얻은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조례안 제14조 제3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위촉 해제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1조 중 “편성 지원한다”를 “편성·지원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타”를 “다른 곳”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예술단의 운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 중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4조를 대신하여 문화재단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자체운영방침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u>관하여 필요</u>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u>필요</u>----- ----- ----- -----</p>
<p>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⑥ (생략)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개의(開議)</u>----- -----</p>
<p>제5조(전형위원) ① (생략)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5조(전형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람</u> ----- -----</p>
<p>제6조(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p>	<p>제6조(전형의 방법) ----- -----</p>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 되는 사람은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자격과 위촉) ① ~ ③ (생략)

④ 단원의 수시위촉은 해당 예술감독이 실기와 면접을 실시한 후 예술감독의 추천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분야별 예술단원 신청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학교)이 구에 있는 자로 한다.

⑥ (생략)

제10조(해촉) ① 구청장은 예술감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 따라 -----  
-----.

제7조(자격과 위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따라 -----  
-----.

⑤ -----  
-----  
----- 사람으로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촉 해제) ① -----  
-----  
----- 위촉  
해제할 -----.

1. ~ 3. (현행과 같음)
4. ----- 방  
해-----

②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 의사를 표명한 단원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구의 예산으로 편성 지원한다.

제12조(실비보상) ① (생략)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과 심의에 참여한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입장료 징수) ①·② (생략)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4조(위탁관리) ①·② (생략)

<신 설>

② ----- 따라 -----  
-----  
-----  
위촉 해제---

제11조(예산의 지원) -----  
-----  
----- 편성·지원한다.

제12조(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범위-----  
-----.

제13조(입장료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른 곳-----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단의 운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한다)에 위탁 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 중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  
4조를 대신하여 문화재단은 운  
영위원회에 관한 자체운영방침  
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문화회관 운영·관리
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관리
3.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4.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시행
5.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구 문화대학 운영)
6.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5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입법취지(개정이유)

- 현행 영유아보육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개정에 따른 미정비 조항 개정
-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한 규제개선 및 알기 쉽게 정비
- 아동학대 등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보육솔루션위원회” 설치·운영
- 보육의 질 향상, 건강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2. 주요내용

- 장 신설(제1장 ~ 제7장)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제2조)
-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 관련조항 정비(제3조, 제4조)
- 구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관련조항 정비(제5조~제12조)  
- 위탁기간 변경(3년 → 5년)(제7조)

- 의무조항 변경(수탁자 의무 → 위탁자 의무) 당사자 간 협의하여 계약 (제8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조항 정비(제13조~제18조)
- 보육솔루션위원회 구성·운영(제19조 ~ 제22조)
- 비용의 보조를 법령·현실에 맞게 정비 및 구체적인 내용 추가(제23조)
- 보육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칙 조항 신설 (제25조~제2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여성보육과, 전화 032-560-5721, 팩스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
2.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각각 따른다.

### 제3장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

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구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기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가 1명(1개 기관)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되, 두 차례 연장하여 총 세 차례까지만 한다.

**제7조(위탁기간)**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세부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개인(원장)인 경우 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구립어린이집의 휴·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자의 의무)** 위탁자(인천광역시 서구)는 아래의 각 호의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구립어린이집 운영관련 관계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그 밖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
3.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교직원 인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약보육 우선 실시에 관한 사항
5.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 변경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6.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반환에 관한 사항
7. 시설 멸실 또는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및 복구가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용 부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및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

**제9조(교직원 임면)** ①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장이 되며, 그 밖의 교직원 원은 원장이 임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면결과를 원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기준은 영 제 21조에 따른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규칙 제2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3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그 밖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특수교사(치료사), 컨설턴트, 행정원, 운영요원 등(이하 “그밖에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③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④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직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5조(직원 임면)** 이 조제 제14조제1항의 센터장 및 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

2. 직원: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

**제16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 제1항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
3.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 공간 제공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다.

### 제5장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사고 및 복합적 민원사항 등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피해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솔루션위원회(이하 “보육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자문한다.

1.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사건·사고의 해결 방안
2.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지원 방안
3.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보호자 간담회 참석 및 전문가적 의

결 제시·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보육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상담전문가
3. 법률전문가
4. 경찰공무원
5. 보육관련 공무원

③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도·점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1조(임기)** ① 보육솔루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보육솔루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3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영 제24조 제1항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
2.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3.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및 연수비용
4. 영유아 체력단련 및 어린이집 화합도모를 위한 합동운동회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센터장 등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25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의 선발, 표창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시책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해 영유아의 부모,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제안이나 사례를 공모할 수 있고, 우수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는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심리검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정서적·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직원 또는 영유아에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영유아 보육 업무상 발생한 보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에게 정서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정

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 위탁하는 구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5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 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을 정비하고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를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장 아동위원, 제4장 보칙으로 구분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 정비 (안 제3조제2항)
  - 아동·청소년단체를 아동단체로 정비
  - 위원 위촉시 자격기준별 각각 1명 이상을 위촉토록 함.

## ○ 위원 해촉에 관한 조문 정비 (안 제5조)

- “해촉”의 용어를 “위촉 해제”로 순화하여 정비
- 위촉 해제사유에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의 규정 신설

## ○ 아동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부터 제15조)

-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 아동위원의 역할을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함.
- 위촉 해제,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여성보육과, 전화 032-560-5731, Fax 032-560-2744)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을 정비하고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를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장 아동위원, 제4장  
보칙으로 구분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 정비  
(안 제3조제2항)

- 아동·청소년단체를 아동단체로 정비
- 위원 위촉시 자격기준별 각각 1명 이상을 위촉토록 함.

라. 위원 해촉에 관한 조문 정비 (안 제5조)

- “해촉”의 용어를 “위촉 해제”로 순화하여 정비
- 위촉 해제사유에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의 규정 신설

마. 아동위원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부터 제15조)

-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 아동위원의 역할을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아동복지에 관하여

-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함.  
- 위촉 해제,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구성 및 운영”을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조제1호 중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양성”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청소년 단체”를 “아동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4장제16조, 제7조의3 및 제10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0조)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을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3장 아동위원”을 삽입한다.

제3장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의 수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4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였을 때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제15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u> <u>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u> <u>운영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13조</u>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u>구성 및 운영</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u>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u>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u> <u>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u> <u>및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 ----- <u>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u>----- ----- <u>구성 · 운영 및 아동위원</u>-----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u></p> <p>제2조(설치 및 기능) ----- ----- ----- ----- -----.</p> <p>1. ----- ----- <u>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u>----- -----</p>

<p>2. <u>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u></p>	<p>&lt;삭 제&gt;</p>
<p>3. <u>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u></p>	<p>&lt;삭 제&gt;</p>
<p>4. <u>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u></p>	<p>&lt;삭 제&gt;</p>
<p>5. <u>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u></p>	<p>&lt;삭 제&gt;</p>
<p>6. <u>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u></p>	<p>&lt;삭 제&gt;</p>
<p>7. (생략)</p>	<p>2. (현행 제7호와 같음)</p>
<p>8. 삭제</p>	
<p>9. <u>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lt;삭 제&gt;</p>
<p>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u>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u> -----</p>

1. 2. (생략)

3.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생략)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생략)

<신설>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1. 2. (현행과 같음)

3. 아동단체 -----  
-----  
-----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위촉 해제-----  
-----.

1. ----- 위촉해제를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

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11조 (생 략)

<신 설>

제12조 (생 략)

-----.

제3장 아동위원

제11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구청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의 수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의3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신 설>

제14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였을 때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신 설>

제15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보칙